

13. 勤勞者住宅建設施行指針改正

資料提供：建設部

○ 건설부는 저소득무주택근로자의 주거안정을 통한 노사화합으로 산업평화정착을 도모기 위하여 근로자주택의 입주대상업종확대 및 절차간소화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근로자주택건설시행지침을 '93. 8. 20개정 시행키로 하였음.

○ 이번에 개정된 주요개정내용

① 입주대상업종의 확대

10인이상 상시종업원을 고용한 제조업, 운송업, 위생서비스업 종사근로자로 국한되어 있던 것을, 5인이상 상시종업원을 고용한 자로 하였으며, 대상업종도 전기·가스 및 증기업, 창고 및 통신업을 추가함으로써 그 수혜대상을 확대하였음.

② 사업주체간 배정물량전환시 절차간소화

사업주체간 배정물량전환시 건설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나, 앞으로는 시·도지사가 조정후 건설부장관에게 사후보고토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시행의 적시성을 도모토록 하였음.

③ 고용자가 직접건설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추가모집시 자사소속근로자에 대한 우선권 부여

미분양주택에 대한 추가모집후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자사소속근로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토록 하기 위하여 입주대상자격요건중 “소득제한”규정의 적용을 배제토록 함으로써 노사화합에 기여토록 하였음.

④ 미분양시 유형변경절차 간소화

미공급 잔여세대에 대하여 건설공정 30% 도달시까지 1회이상 재모집공고토록 되었으나, 앞으로는 건설공정에 제한없이 1회이상 재모집공고토록 함으로써 사업주체의 자금부담을 완화토록 하였음.

**제조업, 운수·창고 및 통신업,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,
전기·가스 및 증기업종의 세부내용**

현	행	개	정	안
<p>1. 제조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“한국표준산업분류”대분류D ○ 중분류 대상업종 23개 업종 (신설) <p>2. 운송업(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60)</p> <p>가. 도시간 철도운송업(60100)</p> <p>나. 정기노선여객육상운송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구역내 철도운송업(60211) ○ 시외버스, 시내버스운송업 (60212, 60213) ○ 택시운송업(개인택시운송업제외) (60221) ○ 정기노선 도로화물운송업(60231) 	<p>1. 제조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“한국표준산업분류”대분류 ○ 중분류 대상업종 23개 업종 <p>2. 전기·가스 및 증기업</p> <p>○ 대분류 E중 중분류 40에 해당하는 업종</p> <p><u>전기업(401)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발전업(40101) • 달리분류되지않은 전기업(40109) <p><u>가스제조 및 공급업(402)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가스제조 및 배관업(40201) • 달리분류되지않은 가스제조 및 공급업 (40209) <p><u>증기 및 온수공급업(403)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난방, 동력 또는 기타목적용을 위하여 열, 증기 및 온수생산업(배관조직을 통한 온천수 공급활동 포함) <p>3. 운수, 창고 및 통신업(대분류 1)</p> <p>가. 도시간 철도운송업(601)</p> <p>나. 기타 육상운송업(602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구역내 철도운송업(60211) • 시외버스운송업(60212) • 시내버스운송업(60213) • 택시운송업(60221) • 전세버스운송업(60222) • 정기노선 도로화물운송업(60231) • 특수화물 자동차운송업(60232) • 일반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업 (60233) 			

현행	개정안
<p>다. 수상운송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내항여객 및 화물운송업 (61101, 61102) ○ 외항여객 및 화물운송업 (61103, 61104) ○ 내륙수상여객 및 화물운송업 (61201, 61202) <p>라. 운수관련서비스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 (63011) ○ 수상화물취급업(63012) 	<p>다. 해상운송업(611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내항여객운송업(61101) • 내항화물운송업(61102) • 외항여객운송업(61103) • 외항화물운송업(61104) <p>라. 내륙수상운송업(612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내륙수상 여객운송업(61201) • 내륙수상 화물운송업(61202) <p>마. 여행알선 및 운수관련서비스업(630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항공 및 육상화물 취급업(63011) • 수상화물 취급업(63012) • 보통창고업(63021) • 냉장창고업(63022) • 위험물품 보관업(63023) • 농산물 창고업(63024) • 달리분류되지않은 보관 및 창고업 (63029) <p>바. 우편물송달업(6412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영우편업무 담당기관이 아닌 사업자가 편지, 소형우편물, 우편화물 및 소화물을 수집, 운반, 배달하는 산업활동 <p>사. 전기통신업(642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유(무)선 전신·전화업 (64201, 64202) • 부가통신업(64203)

현 행	개 정 안
<p>3. 위생서비스업(90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일반폐기물 수집·처리업(90011) ○ 특정폐기물 수집·처리업(90012) ○ 하수시설 관리운영업(90021) ○ 분뇨수거 및 처리업(90022) ○ 축산폐기물 수거·처리업(90023) ○ 폐수처리업(90024) ○ 달리 분류되지 않은 위생 및 서비스업(90090) ○ 청소업무에 종사하는 가로환경미화원 지역환경미화원등 청소직근로자 <p>※ 연탄제조업은 '91. 9. 9한국표준산업분류개정으로 제조업에서 광업으로 변경되었으나 근로자주택 입주대상자격을 계속 인정함.</p>	<p>4.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(중분류 90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일반폐기물 수집·처리업(90011) • 특정폐기물 수집·처리업(90012) • 하수시설 관리운영업(90021) • 분뇨수거 및 처리업(90022) • 축산폐기물 수거·처리업(90023) • 폐수처리업(90024) • 달리 분류되지 않은 위생 및 서비스업(90090) • 청소업무에 종사하는 가로환경미화원 지역환경미화원등 청소직근로자 <p>※ 연탄제조업은 '91. 9. 9 한국표준산업분류개정으로 제조업에서 광업으로 변경되었으나 근로자주택 입주대상자격을 계속 인정함.</p>